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54 발의연월일: 2020. 11. 26.

발 의 자: 박주민·김남국·김용민

김종민 • 박범계 • 소병철

송기헌 · 신동근 · 백혜련

최기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및 제28조).

법률 제 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 또는 불송치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 또는 불송치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불기소 또는 불송치가 종국적(終局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을 "불기소 또는 불송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를 "불기소 또는 불송치의"로 한다.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를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를 한 사법경찰관이 소 속된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힞}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 | 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 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 (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 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 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 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終局的)인 처분 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 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 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 한다)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 또는 불송치를 -----

----. 다만, 구금 된 이후 불기소 또는 불송치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 소 또는 불송치가 종국적(終局 的)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 송법 |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불기소를 한 검사가 소속된 지 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 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 또는 불송치를 한 사법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대 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보상청구서에 <u>공</u>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u>검사로</u> 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⑤ (생 략)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u>불</u>
기소 또는 불송치를
③ 불기소
또는 불송치의
④·⑤ (현행과 같음)